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4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세 진)